

**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**(제13조의7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(법 제 19조의4제1항제1호·제2호·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- 5)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)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해 당 조 항	행 정 처 분 기 준			
		1차	2차	3차	4차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	법19조의4제1항제1호	등록취소			
나. 법 제19조의2제1항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19조의4제1항제2호	경고	등록취소		
다.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19조의4제1항제3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라.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	법19조의4제1항제4호	경 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마.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1)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)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19조의4제1항제5호	경 고 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	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
바.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19조의4제1항제6호 법19조의4제2항제1호	경 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사. 법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19조의4제1항제7호 본문	등록취소			
아.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영·관리 업무를 한 경우	법19조의4제1항제8호	등록취소			
자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않는	법19조의4제2항제3호	경 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
경우